

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.  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8월 25일, 이훈기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※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 
(2025.9.17.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(2025.9.18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  
반영폐기)

제5차 행정안전위원회(2025.9.22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  
(대안반영폐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이훈기의원)

현재 미디어의 정책·진흥·규제가 3개 부처(과기정통부·방통위·  
문체부)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

능하고,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,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.

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· 전문성 · 집중성 · 효율성이 약화 되고,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 · 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인공지능(AI)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.

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,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 · 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.

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,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.

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 ·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 · 육성하고,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,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· 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립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.

즉, 현재 방통위, 과기정통부,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

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·포괄하는 독립제 행정부처 「미디어콘텐츠부」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동시에, 정치적 방송통제·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, 악용되었던 기존의 「방송통신위원회」는 폐지하고,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‘보도기능’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·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,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「공공미디어위원회」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,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「미디어콘텐츠부」를 신설하고자 함(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

#### 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.

##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윤건영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##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기관 명칭만 다를 뿐 기능상 차이가 없는데,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의 필요성이 미흡함. 또한, 금융위원장직을 존치하면서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켜야 할 이유가 없음.

#### 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